

	학생연구자 지원지침	심의구분 : 개정 제안부서 :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
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안사유
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(2022.12.21.) 개정사항 반영

현행	개정(안)	개정요점
제5조(연구참여확약 체결 및 변경)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. 5. 학생연구자 업무량 증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제7조(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)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%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. 1. 학사과정 : 월 1,000,000원 2. 석사과정(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이하 포함) : 월 1,800,000원 3. 박사과정(석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상 포함) : 월 2,500,000원	제5조(연구참여확약 체결 및 변경)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. 5.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7조(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)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%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. 1. 학사과정 : 월 1,300,000원 2. 석사과정(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이하 포함) : 월 2,200,000원 3. 박사과정(석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상 포함) : 월 3,000,000원 부칙(2023.03.01.) 이 개정 지침은 2023.03.01.부터 시행한다.	▶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(제91조 제3항의 5) ▶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(제40조 제3항, 제49조)